

##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6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2. 16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건축법('99. 2. 8 공포), 건축법시행령('99. 4. 31 공포), 부산광역시건축조례('99. 11. 25 공포)가 개정·시행됨에 따라, 자치구 건축조례가 시조례로 통합운영토록 되어 있어 우리구 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○ 제9장 제41조로 구성된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를 폐지함.

### 3. 관계법령

○ 건축법 제5조의3, 부산광역시건축조례

##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 폐지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9. 11. 25일부터 적용한다.